

영등포구의회
제150회 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 지방세 납세증명 1건 800원 ⇒ 삭제
 - 무적증명 1건 500원 ⇒ 삭제
 - 부존재증명 1건 200원 ⇒ 신설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신청 1건 1,000원 ⇒ 삭제
 -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1건 1,000원 ⇒ 삭제
 - 영화상영관 신규 등록 1건 20,000원 ⇒ 신설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1건 10,000원 ⇒ 신설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신규 신고 1건 20,000원 ⇒ 신설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 1건 10,000원 ⇒ 신설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 신설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징수현황(2009.10.31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지방세 납세증명	54,048	43,238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 지방세 납세증명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삭제하고
- 무적증명 수수료는 『호적법』 이 2007년 5월 17일 폐지에 따라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부존재증명 수수료 신설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6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위 수수료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90조의 개정(2009.5.8)에 따라 영화업 신고 등의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신설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12. 3.

보고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09.9.26] [대통령령 제21616호, 2009.7.7, 제정]

제10조 (수수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1] [대통령령 제21755호, 2009.9.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별표] <개정 2009.9.29>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제90조 (수수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1의3.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